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24학년도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충남 · 세종의 대표 국립대학교

※ 본 요강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최종 원서 접수 전  
반드시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s://ipsi.kongj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1. 입학전형 일정 .....	1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2
3.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	4
3-1. 입학 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 .....	5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	5
3-2. 정원 제한 없는 전형 .....	8
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8
나. 북한이탈주민 .....	9
4. 지원 절차 및 방법 .....	10
5. 제출 서류 .....	11
6. 전형 방법 및 선발 원칙 .....	13
7. 합격자 발표 .....	14
8. 합격자 등록 .....	14
9. 전형료 .....	15
10. 지원자 유의사항 .....	16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17
※ 각종서식 .....	18

- 본 모집요강 내 전형 중 1개 모집단위에 1회 지원 가능(복수지원할 수 없음)
- 지원자가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9월 입학전형 포함)한 경우 접수가 취소처리 되오니, 수험생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문서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 및 총원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1. 입학전형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접수	2023. 7. 3.(월) 10:00 ~ 7. 7.(금)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 href="https://ipsi.kongju.ac.kr">https://ipsi.kongju.ac.kr</a>)</li> <li>※ 온라인 원서접수만 실시</li> <li>※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지원사항 변경 및 접수·취소 불가</li> </ul>
서류 제출	2023. 7. 3.(월) 10:00 ~ 7. 21.(금) 18:00까지 도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입학본부 입학과(대학본부 208호)</li> <li>※ 인터넷 원서접수 후 제출 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방문 제출은 평일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li> <li>※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 자격 부적격 처리</li> <li>※ 제출 서류 도착 확인 및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니 전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출서류 이상 유무 및 도착 확인 요망</li> </ul>
면접고사 대상자 발표	2023. 8. 14.(월)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 href="https://ipsi.kongju.ac.kr">https://ipsi.kongju.ac.kr</a>)를 통해 면접 대상자 및 장소 등 세부사항 공고</li> <li>※ 개별 통보 없음</li> </ul>
면접고사	2023. 8. 23.(수) 1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고사 시 신분증, 수험표 필수 지참</li> <li>※ 국외 체류자 중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비대면 화상 면접 실시</li> </ul>
합격자 발표	2023. 12. 15.(금) 18:00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a href="https://ipsi.kongju.ac.kr">https://ipsi.kongju.ac.kr</a>) (개별 통보 없음)</li> <li>○ 총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2023. 12. 22.(금) ~ 12. 28.(목)) 세부 일정은 추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안내 예정</li> </ul>
합격자 문서등록	2023. 12. 18.(월) 09:00 ~ 12. 21.(목)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 문서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등록 시 합격취소</li> <li>※ 문서등록 방법은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별도 안내</li> </ul>
합격자 최종 등록금 납부	2024. 2. 7.(수) 09:00 ~ 2. 13.(화)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은행(전국 각 지점)</li> <li>※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고지서를 개별 출력하여 직접 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li> </ul>

※ 상기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공고함

##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 안내

- 모집인원은 모집단위 구분 없이 2024학년도 입학정원[첨단분야 모집단위 제외]의 2%이내 (54명)이며,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 제외

### 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단위: 명)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선발가능인원	비고
공주 캠퍼스	인문사회 과학대학	인문· 사회계	영어영문학과	32	3명 이내	
			중어중문학과	36	3명 이내	
			불어불문학과	24	2명 이내	
			독어독문학과	24	2명 이내	
			사학과	23	2명 이내	
			지리학과	24	2명 이내	
			경제통상학부	52	5명 이내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영학과	29	2명 이내	
			관광경영학과	34	3명 이내	
			관광&영어통역융복합학과	34	3명 이내	
			행정학과	33	3명 이내	
			법학과	31	3명 이내	
			사회복지학과	31	3명 이내	
	자연과학 대학	자연계	데이터정보물리학과	34	3명 이내	
			응용수학과	33	3명 이내	
			화학과	33	3명 이내	
			생명과학과	35	3명 이내	
			지질환경과학과	31	3명 이내	
			대기과학과	32	3명 이내	
			문화재보존과학과	19	1명 이내	
			의류상품학과	19	1명 이내	
	예·체능계	예·체능계	생활체육지도학과	17	1명 이내	
	간호보건 대학	자연계	간호학과	64	6명 이내	
			보건행정학과	36	3명 이내	
			응급구조학과	26	2명 이내	
			의료정보학과	27	2명 이내	
예술대학	예·체능계	예·체능계	게임디자인학과	31	3명 이내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선발가능인원	비고	
천안 캠퍼스			가구리빙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주얼리·금속디자인학과	17	1명 이내		
			만화애니메이션학부	35	3명 이내	카툰코믹스전공 애니메이션전공	
			무용학과	22	2명 이내		
			영상학과	31	3명 이내		
	본부소속	자연계	국제학부	26	2명 이내	국제금융공학전공	
		천안 공과대학	자연계	전기전자제어공학부	148	14명 이내	전기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반도체정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30	3명 이내	
				스마트정보기술공학과	28	2명 이내	
				컴퓨터공학과	45	4명 이내	
				소프트웨어학과	44	4명 이내	
				기계자동차공학부	129	12명 이내	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미래자동차공학과	30	3명 이내	
				스마트인프라공학과	44	4명 이내	
				도시·교통공학과	25	2명 이내	
				건축학과	32	3명 이내	(5년제)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32	3명 이내	
				화학공학부	68	6명 이내	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신소재공학부	73	7명 이내	나노재료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금속재료공학전공
디자인컨버전스학과				37	3명 이내		
환경공학과				32	3명 이내		
산업공학과				28	2명 이내		
광공학과				27	2명 이내		
디지털융합금형공학과				19	1명 이내		
지능형모빌리티공학과				25	2명 이내		
본부소속	자연계	인공지능학부	35	3명 이내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선발가능인원	비고
예산 캠퍼스	산업과학 대학	인문·사회계	지역사회개발학과	18	1명 이내	
			부동산학과	18	1명 이내	
			산업유통학과	18	1명 이내	
		자연계	식물자원학과	30	3명 이내	
			원예학과	32	3명 이내	
			동물자원학과	31	3명 이내	
			지역건설공학과	24	2명 이내	
			스마트팜공학과	24	2명 이내	
			산림과학과	32	3명 이내	
			조경학과	24	2명 이내	
			식품영양학과	25	2명 이내	
			외식상품학과	18	1명 이내	
			식품공학과	23	2명 이내	
			특수동물학과	25	2명 이내	
			수산생명의학과	25	2명 이내	
합 계				2,307	54명 이내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및 북한이탈주민전형은 모집인원 제한 없음

※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의 경우 전체 합격자가 최대 선발가능인원(54명)을 초과할 경우, 모집단위 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함

### 3.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b>입학정원 2%이내 모집 (모집단위별 10% 이내)</b>	<p>「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li> </ul>
<b>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b>	<p>「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li> <li>-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li> <li>•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재외국민</li> <li>•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외국인</li> <li>•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후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li> </ul>

※ 복수국적자: 「국적법」 제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3-1.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

####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 1) 기본 학력조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등학교에서 국내고등학교로 전학하여 국내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졸업(예정)은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함

※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 시점: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가 1개월은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인정함)

##### ※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

-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을 인정함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초·중·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ESL(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유치원과정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2) 지원자격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국외체류기간을 인정함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자녀의 국외소재 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국외근무기간과 중첩되는 기간만을 인정함

※ 부모의 국외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3)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국외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li> <li>※ 국외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li> </ul>
국외근무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li> </ul>
국외재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기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li> <li>○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단,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li> <li>○ 1개 학년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li> <li>·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li> </ul> </li> <li>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li> </ul> </li> </ul> </li> <li>○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li> <li>○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li> <li>○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li> <li>·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li> <li>·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li> <li>·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li> </ul> </li> <li>○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li> </ul>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국외재학기간	<p><b>예시) 동일 학기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b>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학년</th> <th colspan="2">1</th> <th colspan="2">2</th> <th colspan="2">3</th> <th colspan="2">4</th> <th colspan="2">5</th> <th colspan="2">6</th> <th colspan="2">7</th> <th colspan="2">8</th> <th colspan="2">9</th> <th colspan="2">10</th> <th colspan="2">11</th> <th colspan="2">12</th> </tr> <tr> <th>학기</th> <th>1</th><th>2</th> </tr> </thead> <tbody> <tr> <td>재학 기간</td> <td>D</td><td>D</td> <td>D</td><td>D</td> <td></td><td></td> <td></td><td></td> <td></td><td></td> <td>D</td><td>D</td> <td>D</td><td>D</td> <td>D</td><td></td> <td></td><td></td> <td>D</td><td>D</td> <td>D</td><td></td> <td></td><td></td> </tr> <tr> <td></td> <td></td><td></td> <td>A</td><td>A</td> <td>A</td><td>A</td> <td></td><td>누락</td> <td></td><td></td> <td></td><td></td> <td>A</td><td>A</td> <td>A</td><td>A</td> <td></td><td>누락</td> <td></td><td></td> <td></td><td></td> <td>누락</td><td>A</td><td>A</td><td>A</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margin-right: 150px;">→</span> <span style="margin-right: 150px;">→</span> <span>→</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margin-right: 150px;">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span> <span style="margin-right: 150px;">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span> <span>G11-1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span> </p> <p>※ 위 예시는 <b>학제차이</b>로 인한 경우에 한함</p>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국외 체류일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li> </ul> </li> <li>○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li> </ul> </li> <li>○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li> <li>○ 학기종료일 이후 학사일정이 없는 경우(방학 등)에도 체류기간의 축소 변동은 없음</li> </ul>																																																																																																						
국외 근무자 등의 근무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li> </ul>																																																																																																						
부모의 근무기간, 체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li> <li>- 국외 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li> </ul> </li> <li>○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을 기준으로 함(해당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li> </ul> </li> </ul>																																																																																																						
코로나-19 관련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진행 시,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을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해당기간 국내 체류 시 국외체류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li> </ul> </li> </ul>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적용

### 3-2. 정원 제한 없는 전형

#### 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1) 기본 학력조건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졸업(예정)은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함

##### ※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초·중·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ESL(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유치원과정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2) 지원자격

구분	지원 자격	최저 국외 재학·거주·체류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12년	12년	12년	-	-	-	-	-

※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지원 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3) 어학 자격기준(외국인에 한함):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

※ 외국인은 합격 후 비자발급을 위해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4)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분	주요 인정 기준
재학기간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li> <li>○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li> <li>①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li> <li>②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li> </ul>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li> </ul> <p><b>예시)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기준</b></p> <table border="1"> <thead> <tr> <th>학년제</th> <th>인정여부 및 인정조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0학년 이하</td> <td>미인정</td> <td rowspan="3">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td> </tr> <tr> <td>11학년제</td> <td>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td> </tr> <tr> <td>12학년제</td> <td></td> </tr> <tr> <td>13학년 이상</td> <td>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td> <td></td> </tr> </tbody> </table> <p>*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li> </ul>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 나. 북한이탈주민

### 1) 기본 학력조건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 졸업(예정)은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가능함

※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 시점: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

### 2) 일반 자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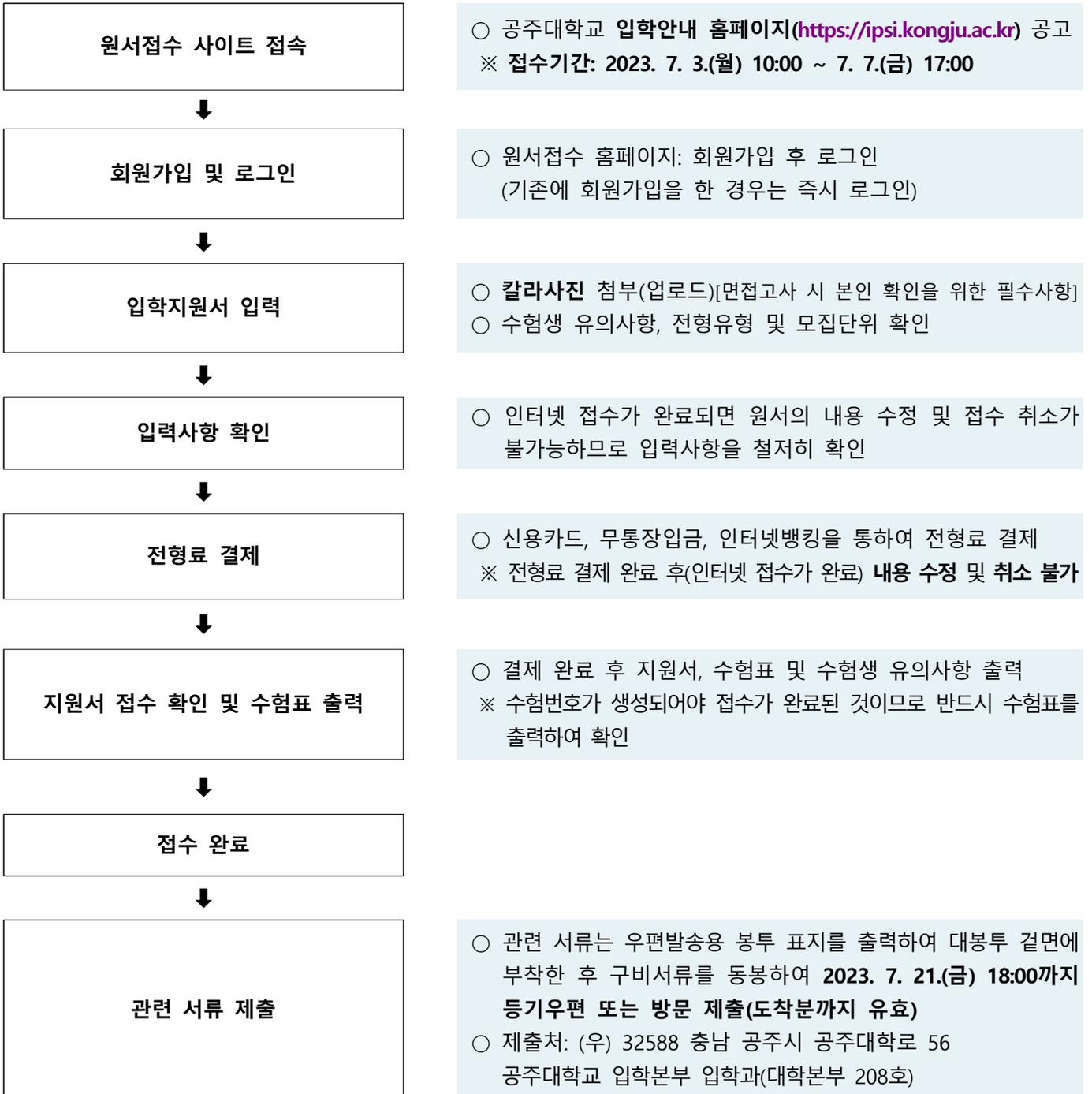
구분	지원 자격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 3)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도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li> <li>○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 검정고시 이수자 지원 가능</li> </ul>

## 4. 지원 절차 및 방법

- 수시모집에서 6회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모두 접수 취소처리 되니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2023. 7. 7.(금) 17: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5. 제출 서류

### 가.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 ○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자 제출 )

제출서류명	지원 자격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비고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	○	
[서식 2]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	○	○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서식 3] 자격심사신청서(한글 작성)		○	○	-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재학사항 입력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초·중·고 재학증명서		○	○	-	- 재학기간 명기
초·중·고 성적증명서		○	○	-	-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가능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	○	-	- 국외 중·고교 과정 학기시작일/종료일, 방학시작일/종료일 필수 기재 - 해당 외국학교의 홈페이지 출력물(웹사 이트 주소가 표기), 브로셔 등의 제출도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학생)	○ (학생)	-	-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 기본증명서, 친권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여권 사본		○ (부·모·학생)	○ (학생)	-	- 제출자의 서명, 국적 및 사진 부분 복사
[서식 4]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 위임장		○ (부·모·학생)	○ (학생)	-	-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 위임장(발급·열람 대상자) 부분만 작성(기타 출입국 조회 기간, 위임장의 연월일 기재 금지)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 (학생)	-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외국국적 증명(여권, 시민권)		△ (외국인)	△ (외국인)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 (부·모·학생)	△ (재외국민)		
부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국외근무경력 명시)		△	-	-	☑ 국외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신고서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신고서		△	-	-	☑ 국외파견 재직자 제출서류
국외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외국정부 발급)		△	-	-	☑ 현지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체류기간 중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	-	-	☑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	-	☑ 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파견 등 발령공문 사본(해당자)		△	-	-	☑ 국외파견 재직자
외국인 등록증(해당자)		△ (외국인)	△ (외국인)	-	
어학능력 입증서류		-	△ (외국인)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외국인)	△ (외국인)	-	- 국내·외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원본 (USD 18,000 이상)
귀하허가 입증서류			△ (결혼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	
통일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	-	△	
학력 인정 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또는 고등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	
[서식 5] 사유서(필요시 작성)		-	-	△	- 원서접수 시 인터넷 입력 후 서류제출 기간에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 추후 사실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 제출서류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의 제출대상자를 확인한 후 서류 제출 요망

## 나. 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 1) 제출서류 중 입학원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자격심사신청서,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사유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한 후 제출 바라며, 제출서류 발송용 봉투 표지(원서 접수 시 출력 가능)를 부착하여 발송하여야 함  
※ [서식 1~5]에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2) 필요한 서류는 지정기일까지 우리대학 지정장소로 등기우편, 택배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2023. 7. 21.(금) 18:00**까지(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입학본부 입학과(대학본부 208호) 우)32588
  - 방문 제출은 평일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서류접수 이후 추가 서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1)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입학본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 2) 국외에서 발급 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같음
- 3) 코로나-19,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지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학교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서식 5]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4) 국외 학교의 경우 불가피하게 초·중학교 재학 및 성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학교의 정책에 따라 대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은 대체서류 등을 통해 학력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5)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이외에 불필요한 서류(상장, 수상메달, SAT 성적)등은 제출이 불필요함
- 6) 지원자가 외국인인 경우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국내·외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원본(USD 18,000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 예금잔고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까지 인정함(단, 발급일이 6개월 이내일 것)  
※ 재정능력 입증 서류는 본인 또는 부모의 잔고증명서를 제출
- 7) 본 대학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라. 추가서류 제출(최종합격 이후 등록자)

- 1) **2024. 2. 29.**까지 포함해야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최종 합격자**는 지원자 졸업증명서

및 보호자의 재직(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지원 자격 서류를 추가로 2024. 2. 29.(금)까지 입학본부로 제출하여야 함

※ 국외에서 발급 받은 모든 서류는 위 다. 2) 유의사항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 요망

-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합격 이후에도 지원자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6. 전형 방법 및 선발 원칙

### 가. 전형 방법

전형요소		전형총점	비고
서류 자격심사 (1단계)	면접고사 (2단계)		
· 지원자격에 대한 적합여부 심사 ·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100점(100%)	100점	※ 국외 체류자 중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비대면 화상 면접 실시 - 비대면 화상 면접은 정해진 시간 내 자리 이석 등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고사 미응시로 불합격 처리 ※ 비대면 화상 면접 세부방법은 면접고사 대상자에게 추후 안내

### 나. 면접고사 평가방법

- 1) 다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씩 실시
- 2) 면접시간은 10분 내외로 실시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수험표로 본인 확인

### 다. 평가영역 및 기준

평가영역	평가요소	배점
전공적성	전공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 관심 및 비전 여부	25점
문제해결능력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25점
의사소통능력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	25점
(공통) 기본점수	-	25점
계		100점

### 라. 선발 원칙

- 1) 모집단위별 선발 가능인원의 범위에서 총점 순위에 따라 적정 인원을 합격자로 선발함
- 2) 지원자격 미달자, 면접고사 결시자(미응시자), 면접 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 3) 소수점 이하의 성적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 4)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 5)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의 경우 전체 합격자가 최대 선발가능인원(54명)을 초과할 경우,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함

## 7. 합격자 발표

### 가. 합격자 발표 일정

- 1) 최초 합격자: **2023. 12. 15.(금) 18:00** 이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개별 통보 하지 않음)
- 2) 총원 합격자: 후보자가 있을 경우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별도 공고함

### 나. 합격자 발표 방법

- 1) 합격자에 대한 공지사항은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 하지 않음
- 2)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8. 합격자 등록

### 가. 합격자 문서등록

- 1) **합격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문서등록**
- 2) 문서등록 기간: **2023. 12. 18.(월) 09:00 ~ 12. 21.(목) 16:00**  
※ 총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세부 일정은 추후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공고(개별 통보 없음)
- 3) 유의사항
  - 합격자 발표 후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등록의사가 없는 자로 간주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 문서등록 및 최종 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하여야 최종합격자로 처리되며, 문서등록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합격자 최종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나. 합격자 최종 등록

- 1) 납부 금액: 미책정(학사 일정에 따라 2024학년도 등록금 책정 후 별도 공고)

※ 2023학년도(전년도) 등록금(참고)

2023학년도 기준 신입생 등록금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및 공학계열
1,599,000원	1,940,000원	2,115,000원

- 2) 납부기간: **2024. 2. 7.(수) 09:00 ~ 2. 13.(화) 16:00**
- 3) 납부방법: 공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개별 출력하여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장학금 등의 면제로 등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합격자발표시스템에 장학등록(0원 납부)을 처리하여야 등록으로 처리되며,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 다. 등록포기

- 1) 수시(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에 합격하여 등록한 후 타 대학의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즉시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해야 함
- 2) 등록포기 절차: 추후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ipsi.kongju.ac.kr>)에 공고

### 9. 전형료

#### 가. 전형료: 60,000원(1단계 서류전형: 30,000원, 2단계 면접전형: 30,000원)

- 1)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전형료 결제까지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됨
- 2)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아래 사유 외에는 전형료 환불 불가

#### 나. 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증빙서류를 2023. 8. 25.(금)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환불함

- 5) 면접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 자(1단계 서류전형 탈락자): 2단계 면접 전형료에 해당하는 30,000원 반환

※ 원서접수 시 입력한 반환 계좌로 반환하며, 면접 대상자로 선발된 자(1단계 합격자)가 면접에 불참할 시에는 반환하지 않음

#### 다. 모든 입학전형 종료 후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자별로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2024년 4월 30일까지)

- 1)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계좌입금 선택 시 정확한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함
- 2)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0. 지원자 유의사항

### 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관련 사항

- 1)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에 6회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 2)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취소됨
- 3) 수시모집 합격자(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 불가). 수시모집 등록에서 이중등록자(문서등록 또는 예치금 납부자 포함)가 있는 경우 등록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입학이 무효로 처리됨
- 4) 전형 종료 후 신입생의 지원·등록 현황을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 지원, 이중 등록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모두 무효로 하며 입학 이후라도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함

### 나. 수험생 유의사항

- 1) 합격자 발표 전 혹은 발표 후에도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2) 1)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주대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반환함
- 3) 본교 및 타 대학에서 1)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4)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마감기한까지 미도착한 경우 및 본 요강의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지원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6) 지정된 등록기간에 미등록(문서등록 포함)시 별도의 절차 없이 합격이 취소됨
- 7)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8) 지원자는 수험기간 중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게시·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9) 면접 대상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고사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고사 시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 바람  
※ 면접고사 장소는 추후 공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함
- 10) 수험생은 면접고사장 내에서 이동전화 등 일체의 통신 및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음

- 11) 원서접수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수험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주대학교 입학본부(041-850-0111)에 반드시 알려야 함
  - 12) 학부 단위로 입학한 경우 재학 중 대학이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전공을 배정함
  - 13)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 14)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은 입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 주소: 우편번호)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입학본부 입학과(대학본부 208호)
- ※ 전화번호: 공주대학교 입학본부 입학과 ☎ (041)850 -0111, FAX: (041)850-8903

##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대학 입학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함

- 1) 수집 및 이용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신고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국외수학 및 체류기간, 환불계좌 등
- 2) 수집 및 이용 목적: 입학(입시 통계 포함), 학사, 장학, 생활관생 선발, 학생 복지(건강관리 등) 및 입학관련 안내를 위한 자료
- 3) 보유 및 이용기간: 처리목적의 달성 및 보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함
- 4) 공유 및 제공: 위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음

### 나. 입학 지원으로 학적조회 및 거주사실 확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확인 과정에서 부정확한 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서식 1]

2024학년도 공주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입학 정원의 2%이내 모집 전형(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인 또는 서명)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제출	미제출	
공통서류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2] 입학원서			
	[서식 3] 자격심사신청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 재학증명서 ※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국내·외 초·중·고 성적증명서 ※ 국내 및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여권 사본(부,모,학생)			
	[서식 4]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부,모,학생)(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행)			
	부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국외근무경력 명시)			
	[서식 5] 사유서(학기 및 수업결손)			
추가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또는 해외지사설치신고서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신고서			국외파견 재직자
	국외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외국정부 발급)			현지취업자와 자영업자
	체류기간 중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파견 등 발령공문 사본(해당자)			국외파견 재직자
	재정능력 입증서류(외국인)			
기타서류	예) 조기졸업 증명서류			
	예) 개명 증명서류			

- 반드시 모집요강 11쪽 참고하여 서류 확인 후 제출여부에 체크하여 제출
- [서식 1~5]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뒤 서명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기타서류는 조기졸업, 개명 증명서류 등 수기 작성하여 제출

2024학년도 공주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인 또는 서명)	

구분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제출	미제출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2] 입학원서			
	[서식 3] 자격심사신청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 재학증명서			
	초·중·고 성적증명서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주민 학생 및 외국인: 지원자 본인만)			
	여권 사본(학생)			
	[서식 4]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학생)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외국국적 증명(여권, 시민권)(외국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재외국민 학생)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증서류(외국인)			
	재정능력 입증서류(외국인)			
	귀화허가 입증서류(결혼 이주민)			
	[서식 5] 사유서(학기 및 수업결손)			
북한이탈주민	[서식 1] 지원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서식 2] 입학원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교육대상자 증명서			
	학력 인정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서식 5] 사유서			
기타서류				

- 반드시 모집요강 11쪽 참고하여 서류 확인 후 제출여부에 체크하여 제출
- [서식 1~5]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뒤 서명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기타서류는 조기졸업, 개명 증명서류 등 수기 작성하여 제출



[서식 3]

2024학년도 공주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024학년도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 심사신청서

1. 지원전형: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해당란에 ○표

### 2. 지원자 인적사항

모집단위	영어영문학 과(부)	수험번호	
성 명	김공주	성 별	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국 적	대한민국
출신고등학교	○○고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고3)학기 개시일	2023.3.2

### 3.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김고마	관 계	부	직 업	회사원
직 장 명	(주)○○○○사			직 위	과장
주 소	○○시 ○○구 ○○로			전 화	○○○-○○○○-○○○○
본사 인사부서 주소				인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화:( )

### 4. 국외학교 기재란 (한국에 소재한 학교는 미기재)

구 분	학 교 명	출 신 학 교 연 락 처			
		주 소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초등학교	○○초				
중학교	○○중				
고등학교	○○고				

※ 학교명은 공식명칭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전화 및 팩스번호는 국가 및 지역번호까지 기재







[서식 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 <개정 2022. 12. 29.>

(앞쪽)

사실증명 발급 · 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Free online application available at the government website (www.gov.kr) for the issuance of your own Certificate of Fact. Those visiting an immigration office will be required to present only their ID cards without having to complete this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Please fill out this form by referring to the notes on the back pag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Date of Receipt)	발급일 (Date of Issuanc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b>발급대상자</b>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통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copy(ies)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열람 ( )건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time(s)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 This field is only for Korean citizens.	<input type="checkbox"/> 포함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Overseas Korean Resident number), name, address or status of sojourn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Previous Name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Previous Status of Sojourn <input type="checkbox"/> 포함 Yes <input type="checkbox"/> 미포함 No
---	--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Departure Record) 부터(from) . . . . . 까지(to)	
---	--

용도 (Purpose)

<b>신청인</b>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연락처 (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Nam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 the Head of ○○ Si·Gun·Gu or Eup·Myeon·Dong / the Head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 (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issuance of / access to the Certificate of Fact.

2024 년 Year 2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	----------------------------------

210mm×297mm[백상지(80 g / m<sup>2</sup>) 또는 중질지(80 g / m<sup>2</sup>)]

##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complete the shaded sections, and please place a check mark for applicable brackets[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앞쪽 신청인의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전화번호란에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각각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name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access to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4)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 of or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가.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2)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Where a principal is incapable of expressing intentions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benefits of the principal:

    - 1)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2)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only when the spouse is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1)]
  - 나.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a non-Korean principal has permanently left Korea:  
- An employer of the principal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다.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Where a favorable ruling is confirmed in a trial on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here the Certification is needed by financial companies that fall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the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overdue debts, or where there is a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concerned (only when a debt becomes overdue or a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allows a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an original due date,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Creditor who intend to receive or access the Certificate of Fact on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foreigner concerned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fixed date stamp affixed on the agreement, etc.
  - 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public interest.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s shall present his/her own ID card and the application shall be present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the ID card (or a copy) of the authorizing person.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You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or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by submitting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another individual or falsely done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authorization.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Records on this certificate only cover the entry/departures from January 1, 1961, for Korean nationals and from January 1, 1979, for Foreigners.



